

뉴욕주 유급가족휴가제도

New York State Paid Family Leave

1 개요

- 뉴욕주 유급가족휴가제도는 현대사회의 다양한 가족형태를 반영한 유급휴가제도로 2018년 1월 처음 시행됨
- 뉴욕주에 위치한 사기업의 대부분의 직원들을 대상으로 하며 공무원(주정부, 정부 하부조직, 공공기관 등에 근무)의 경우 고용주가 유급가족휴가를 제공할지 하지 않을지를 결정하게 됨
- 휴가 기간 동안 임금의 일부를 지급하고 건강보험이 계속 유지되는 것(기존에 건강보험의 일부를 본인이 지급했다면 이 부분은 본인이 휴가 중에도 계속 지급해야함)을 주요 내용으로 하며 휴가가 끝나고 복직했을 때 동일 혹은 유사한 직책으로의 복귀를 보장함
- Bond(가족 간의 관계를 끈끈하게 하는 것), Care(가족들이 아플 때 보살필 수 있도록 하는 것), Assist(가족이 군복무 중일 때 이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것)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

2 보장내용

- 유급가족휴가제도의 혜택
 - 유급가족휴가제도의 혜택은 2018년부터 2021년까지 4년간의 기간을 가지고 점차 증가함. 2018년에는 최대 8주의 휴가를 쓸 수 있으며 휴가 기간 동안 매주 본인의 주급의 50%를 지급 받을 수 있음

(2018년의 주당 지급액 상한선은 뉴욕주 주민들의 평균 주급의 50%인 \$652.96)

○ 2021년까지의 혜택 증가

연도	휴가기간	지급액
2018	8주	매주 본인 주급의 50% 지급 (상한선 : 뉴욕주 주민 평균 주급의 50%)
2019	10주	매주 본인 주급의 55% 지급 (상한선 : 뉴욕주 주민 평균 주급의 55%)
2020	10주	매주 본인 주급의 60% 지급 (상한선 : 뉴욕주 주민 평균 주급의 60%)
2021	12주	매주 본인 주급의 67% 지급 (상한선 : 뉴욕주 주민 평균 주급의 67%)

□ 유급가족휴가제도의 적용

- 매주 20시간 이상 근무하는 전일제 노동자는 26주 이상 해당 회사에서 연속근무 했다면 유급가족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음
- 매주 20시간 이하 근무하는 시간제 노동자의 경우 175일 이상 해당 회사에서 근무한 뒤 혜택 적용이 가능함 (시간제의 경우 근무가 연속적일 필요 없음)
- 시민권자 여부, 이민 상태와 관계없이 조건을 충족하면 유급가족 휴가제도의 적용을 받을 수 있어야 함
- 본딩 휴가(Bonding Leave)의 적용
 - 본인 혹은 본인의 파트너(혹은 배우자)가 출산 예정이거나 입양 또는 위탁양육을 시작하려는 경우 사용 가능. 출산, 입양, 임시탁아가 시작된 뒤 12개월 안에 휴가를 사용할 수 있음
- 가족돌봄휴가의 적용
 - 배우자, 파트너(동성/이성파트너에 제한 없음, 법적인 제한 없음), 자녀(입양자녀, 위탁아), 부모(양부모), 시부모, 조부모, 손자가 심각한 질병을 앓고 있는 경우 사용 가능
 - 심각한 질병이란 병원, 호스피스 등 기타 시설에서 입원하여 치료를 받고 있는 경우와 의료기술 제공자의 지속적인 감독이 필

요하거나 계속적 치료가 필요한 경우를 말함

- 법적으로 본인이 양육권을 가지고 있지 않더라도 아이의 보호자로서 역할을 하고 있다고 판단되면 유급가족휴가 적용이 가능할 수 있음

○ 현역 군인가족 휴가의 적용

- 배우자, 파트너, 자녀, 부모가 현역 군인이며 해외에 복무를 위해 배치되어 나간 경우에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유급가족휴가를 사용 가능함

□ 비용 : 이러한 유급가족휴가제도의 혜택을 제공받기 위하여 뉴욕주의 노동자들은 고용주에게 매주 임금의 0.126%를 유급가족휴가제도 비용으로 지급하게 됨. 2018년 개인이 유급가족휴가제도를 위해 지급하는 비용의 상한선은 연간 \$85.56(주당 \$1.62)임. 보험료에 따라 매년 비용은 바뀔 수 있음

3 고용주의 책임

□ 유급가족휴가 보험

○ 직원이 1명 이상인 사기업은 직원들에게 유급가족휴가를 제공하기 위한 보험을 가지고 있어야 함. 유급가족휴가 보험은 보통 기존의 회사가 가지고 있던 장애보험에 약관이 추가되는 형식임

○ 각 보험회사마다 지급해야하는 추가금 및 추가금 지급방식이 상이하여 보험회사와 이를 미리 상의해야함

○ 회사가 장애보험 없이 직원들에게 발생한 상해 및 장애에 대해 직접 책임지는 경우 별도의 유급가족휴가 보험에 가입하거나 NYS Workers' Compensation Board (뉴욕주 근로자 보상위원회)에 회사가 보험 없이 직접 유급가족휴가 혜택을 지원하겠다고 보고해야함

- 고용주는 직원들에게 유급가족휴가에 대한 정보(혜택, 휴가 요청 방법)를 포함한 책자 또는 인쇄물을 배포해야함
- 유급가족휴가제도 비용 수금
 - 유급가족휴가 보험료를 납부하기 위해 직원들 주급의 일부를 수금해야함
 - 수금을 시작하기 전 직원들에게 유급가족휴가제도의 비용과 용도에 대해 설명할 것을 권장함
 - 매년 보험료에 따라 수금해야하는 비용은 바뀌며 2018년은 각 직원의 주급의 0.126%를 수금하여 보험료로 지출하게 됨
(2018년 1인당 연간 수금액의 상한선은 \$85.56)

4 정책적 시사점

- 전통적인 가족관이 변화하고 다양한 가족의 형태가 생겨나고 있는 현대사회에서 이에 맞춘 실질적인 유급가족휴가제도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음
- 뉴욕주의 유급가족휴가제도는 입양가정, 위탁가정, 미혼동거가정, 동성부부 등 다양한 형태의 가정에서 가족이 끈끈해질 수 있는 시간을 보장 받을 수 있고 조부모, 손자, 파트너가 아플 때도 가족돌봄휴가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함
- 이는 유급가족휴가제도가 다양한 가족관을 지지하고 모든 형태의 가정이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고 제대로 기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
- 한국에서 가장 보편적인 가족형태로 생각되는 2세대 가구는 전체

가구의 48.3%로 과반수를 넘지 못하고, 과거의 다수를 차지했던 가족형태인 3세대 가구는 전체가구수의 5%를 차지하는 것에서 더 이상 정상가족이라는 개념은 존재하지 않음을 알 수 있음.

- 노령화, 저출산, 가족관의 변화로 인하여 가족의 형태는 계속해서 다양화 될 것이며 한국 지자체에서는 뉴욕주에서 시행하고 있는 유급가족휴가제도와 같은 폭넓게 적용되는 유급가족휴가제도 개발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